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태호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22313

발의연월일 : 2026. 10. 29.

발 의 자 : 정태호・김태년・이학영
이연희・김주영・최기상
김남준・황명선・송재봉
朴芝源・문대림・윤후덕
고민정 의원(1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의 원활한 사업승계를 지원하기 위한 가업승계 관련 조세특례를 두고 있으나, 일정한 요건을 갖춘 제3자에게 기업을 승계하거나 근로자들이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기업의 지배지분을 공동으로 인수하는 경우에 적용할 수 있는 별도의 과세특례는 두고 있지 않음.

그런데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의 경영자 고령화와 후계자 부족으로 기술력과 성장잠재력을 갖춘 기업도 원활한 승계가 이루어지지 못하여 기업의 계속성이 약화될 우려가 있고, 특히 근로자기업인수는 기업과 고용의 계속성을 유지하면서 축적된 기술과 경영노하우를 승계할 수 있는 방식임에도 근로자의 인수자금 조달능력에 한계가 있어 실제 활용에 어려움이 있음.

이에 일정한 요건을 갖춘 제3자가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을 승계하는 경우 양도인의 양도소득세를 감면하고 승계기업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일정 기간 감면하는 한편, 근로자기업인수에 대해서는 주된 양도자 및 공동양도자의 양도소득세의 감면·분할납부를 허용하고, 장기근속 우리사주조합원이 근로자기업인수를 위하여 출자하는 경우 소득공제 한도를 확대함으로써 원활한 사업승계와 고용의 계속성을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30조의8 및 제30조의9 신설 등).

법률 제 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의8 및 제30조의9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0조의8(중소·중견기업 사업승계 지원을 위한 과세특례) ① 제1호에 따른 양도인이 제2호에 따른 양수인에게 2030년 12월 31일까지 「법인세법」을 적용받는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을 사업승계를 위하여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사업용자산에 해당하는 소득으로 한정한다)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세액(제3호의 금액을 한도로 한다)을 감면한다.

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양도인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기업을 2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자

나. 해당 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다. 60세 이상인 거주자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양수인

가. 해당 기업의 업종과 동일한 업종(「통계법」 제22조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 작성·고시하는 표준분류상 동일한 대분류 내의 업종을 의미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대분류 내의 업종이 아니더라도 동일한 업종으로 본다)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기업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

나. 해당 기업의 사업장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5년 이상 계속하여 근무한 임원 또는 직원인 거주자

다. 그 밖에 가목 또는 나목과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자

3. 감면한도: 다음의 계산식에 따른 금액

제1호가목에 따른 경영연수 × 5천만원

② 「소득세법」을 적용받는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을 제1항제1호가목 및 다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양도인이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양수인에게 2030년 12월 31일까지 사업승계를 위하여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세액(제1항제3호의 금액을 한도로 한다)을 감면한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양수인이 양도받은 제1항에 따른 주식 등 또는 제2항에 따른 사업용자산을 양도일부터 5년 이내에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양도인에게 다시 양도하는 경우 제1항 또는 제2

항에 따라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징수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기업 또는 제2항에 따른 기업(이하 이 조에서 “피승계기업”이라 한다)을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사업승계한 기업(이하 이 조에서 “승계기업”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승계일(이하 이 조에서 “사업승계일”이라 한다)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다음 과세연도부터 5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피승계기업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세액(연간 5억원을 한도로 한다)을 감면한다.

⑤ 승계기업이 사업승계일부터 제4항에 따른 감면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4항에 따라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징수한다.

1. 제1항에 따른 양수인이 양수한 주식등의 지분이 감소한 경우
2. 제2항에 따른 양수인이 양수한 사업용자산의 100분의 40 이상을 처분한 경우
3. 다음 각 목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가. 사업승계일부터 제4항에 따른 감면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피승계기업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장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규

직 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정규직 근로자”라 한다) 수의 전체 평균이 사업승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직전 2개 과세연도의 정규직 근로자 수의 평균의 100분의 90에 미달하는 경우

나. 사업승계일부터 제4항에 따른 감면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피승계기업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장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총급여액(이하 이 목에서 “총급여액”이라 한다)의 전체 평균이 사업승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직전 2개 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의 평균의 100분의 90에 미달하는 경우

4. 피승계기업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장을 1년 이상 휴업(실적이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폐업하는 경우

5. 승계기업이 피승계기업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제1항에 따라 주식등을 양도한 자 또는 제2항에 따라 사업용자산을 양도한 자에게 다시 양도하는 경우

⑥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감면을 적용받으려는 양도인과 제4항에 따른 감면을 적용받으려는 승계기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을 신청하여야 한다.

⑦ 승계기업은 사업승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다음 과세연도부터 5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피승계기업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과 그 밖의 사업을 각각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한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지분의 감소 여부에

관한 판정방법, 정규직 근로자 수 및 총급여액의 평균 계산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0조의9(근로자기업인수에 대한 과세특례) 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주된 양도자”라 한다)가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른 우리사주조합(이하 이 조에서 “우리사주조합”이라 한다)에 2030년 12월 31일까지 해당 기업의 주식등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을 근로자기업인수를 위하여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사업용자산에 해당하는 소득으로 한정한다)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이 경우 감면한도는 제1호에 따른 경영연수에 5천만원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기업을 2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자일 것
2. 해당 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일 것
3. 60세 이상인 거주자일 것

② 이 조에서 “근로자기업인수”란 우리사주조합이 「법인세법」을 적용받는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하 이 조에서 “해당 기업”이라 한다)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을 취득하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요건을 모두 갖춘 날을 “사업승계일”이라 한다.

1. 우리사주조합이 해당 기업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

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보유할 것. 이 경우 보유비율을 계산할 때에는 「근로복지기본법」 제37조에 따른 조합원계정과 조합계정에 보유된 우리사주를 모두 포함한다.

2. 해당 기업의 근로자 중 우리사주조합원의 수가 전체 근로자 수의 100분의 50 이상일 것

③ 주된 양도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관계에 있는 거주자로서 양도일 현재 5년 이상 계속하여 보유한 주식등을 근로자기업인수를 위하여 주된 양도자와 함께 우리사주조합에 양도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공동양도자”라 한다)의 그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사업용자산에 해당하는 소득으로 한정한다)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주식등의 양도비율을 판단할 때에는 주된 양도자와 공동양도자가 근로자기업인수를 위하여 양도한 주식등을 합산한다. 이 경우 주된 양도자와 공동양도자가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감면받는 세액의 합계액은 주된 양도자의 제1항제1호에 따른 경영연수에 5천만원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⑤ 주된 양도자 또는 공동양도자가 근로자기업인수를 지원하기 위하여 각자가 지급받을 주식등의 양도대금 중 100분의 50 이상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약정을 한 경우에는 그 양도자에 대하여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감면에

더하여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감면대상이 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세액을 추가로 감면한다.

1. 해당 금액의 지급기일을 사업승계일부터 3년이 지난 날 이후로 정한 경우

2. 해당 금액을 사업승계일부터 3년 이상의 기간에 걸쳐 분할하여 지급받기로 한 경우

⑥ 제5항에 따라 주된 양도자와 공동양도자가 추가로 감면받는 세액의 합계액은 주된 양도자의 제1항제1호에 따른 경영연수에 2천500만원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하고, 제1항, 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주된 양도자와 공동양도자가 감면받는 세액의 총합계액은 같은 경영연수에 7천500만원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주된 양도자와 공동양도자 사이의 감면한도 배분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⑦ 제1항, 제3항 또는 제5항에 따른 감면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⑧ 주된 양도자 또는 공동양도자는 근로자기업인수에 따른 주식등의 양도로 납부하여야 할 양도소득세 중 제1항, 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감면받은 세액을 제외한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5년의 범위에서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다. 이 경우 분할납부를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

⑨ 제5항을 적용받은 자가 같은 항 각 호에 따른 약정 대상 금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약정한 지급기일보다 먼저 지급받은 경우에도 제1항, 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이미 감면받은 세액은 추징하지 아니한다. 다만, 약정 대상 금액의 전부를 약정한 지급기일보다 먼저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 전부를 지급받은 날 이후 제8항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아직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⑩ 우리사주조합은 사업승계일부터 5년이 되는 날까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유지하여야 한다.

1. 해당 기업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보유할 것
2. 해당 기업의 근로자 중 우리사주조합원의 수가 전체 근로자 수의 100분의 50 이상일 것

⑪ 제10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항의 요건을 위반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우리사주조합이 보유하던 주식등을 처분하지 아니하였음에도 기업공개, 유상증자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제10항제1호의 비율에 미달하게 된 경우
2. 우리사주조합원의 퇴직 또는 사망으로 제10항제2호의 비율에 미달하게 된 경우로서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같은 항 같은 호의 요건을 다시 충족한 경우

⑫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항에 따라 추가로 감

면받은 자는 그 감면받은 세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더한 금액을 양도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감면받은 세액은 추징하지 아니한다.

1. 사업승계일부터 사업승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다음 5개 과세연도의 종료일까지 해당 기업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규직 근로자 수의 전체 평균이 사업승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직전 2개 과세연도의 정규직 근로자 수의 평균의 100분의 90에 미달할 것
2. 같은 기간 해당 기업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총급여액의 전체 평균이 사업승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직전 2개 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의 평균의 100분의 90에 미달할 것

⑬ 우리사주조합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제10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요건을 위반한 경우에는 제5항에 따라 추가로 감면받은 자는 그 감면받은 세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더한 금액을 양도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감면받은 세액은 추징하지 아니한다.

⑭ 우리사주조합이 근로자기업인수를 위하여 양수한 주식등을 양도일부터 5년 이내에 주된 양도자 또는 공동양도자에게 다시 양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된 양도자 또는 공동양도자가 제1항, 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감면받은 세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

산한 이자상당액을 더한 금액을 양도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⑮ 제12항부터 제14항까지에 따라 세액을 납부하여야 하는 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고 해당 세액과 이자상당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⑯ 제1항부터 제15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근로자기업인수의 확인, 주식등의 보유비율 및 근로자 참여비율의 계산, 양도대금의 지급유예·분할지급 및 사후관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8조의4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8항제1호 및 제2호 중 “400만원(제16조제1항제3호에 따른 벤처기업등의 우리사주조합원의 경우에는 1천500만원)”을 각각 “제1항에 따라 해당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적용되는 소득공제 한도액”으로 한다.

다만, 제30조의9에 따른 사업승계일 현재 해당 기업에서 5년 이상 계속하여 근무한 우리사주조합원이 근로자기업인수를 위하여 사업승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우리사주조합에 출자한 경우에는 해당 연도의 출자금액과 1천500만원 중 적은 금액을 해당 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제127조제4항 본문 중 “제31조제4항·제5항”을 “제30조의8제4항, 제31조제4항·제5항”으로, “제7조와”를 “제7조 또는 제30조의8제4항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제31조제4항·제5항”을 “제30조의8제4항, 제3

1조제4항・제5항”으로 하며,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7조 및 제30조의8제4항은 동시에 적용받을 수 있다.

제128조제2항, 제3항 및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제31조제4항・제5항”을 각각 “제30조의8제4항, 제31조제4항・제5항”으로 한다.

제132조제1항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조 제2항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제31조제4항・제5항”을 각각 “제30조의8제4항, 제31조제4항・제5항”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중소・중견기업 사업승계 지원을 위한 과세특례의 적용례) ① 제30조의8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주식등 또는 사업용자산을 양도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30조의8제4항부터 제8항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사업승계가 이루어지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근로자기업인수에 대한 과세특례의 적용례) 제30조의9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주된 양도자가 주식등을 양도하여 근로자기업인수가 이루어지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우리사주조합원에 대한 소득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88조의4제1항 및 제8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30조의9에 따른 사업

승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우리사주조합에 출자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중복지원의 배제 등에 관한 적용례) 제127조, 제128조 및 제132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30조의8(중소·중견기업 사업승계 지원을 위한 과세특례) ① 제1호에 따른 양도인이 제2호에 따른 양수인에게 2030년 12월 31일까지 「법인세법」을 적용받는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을 사업승계를 위하여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사업용자산에 해당하는 소득으로 한정한다)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세액(제3호의 금액을 한도로 한다)을 감면한다. 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양도인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기업을 2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자

	나. 해당 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다. 60세 이상인 거주자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양수인 가. 해당 기업의 업종과 동일한 업종(「통계법」 제22조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 작성·고시하는 표준분류상 동일한 대분류 내의 업종을 의미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대분류 내의 업종이 아니더라도 동일한 업종으로 본다)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기업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 나. 해당 기업의 사업장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5년 이상 계속하여 근무한 임원 또는 직원인 거주자 다. 그 밖에 가목 또는 나목

	과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자 3. 감면한도: 다음의 계산식에 따른 금액 제1호가목에 따른 경영연수 × 5천만원 ② 「소득세법」을 적용받는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을 제1항제1호가목 및 다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양도인이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양수인에게 2030년 12월 31일까지 사업승계를 위하여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세액(제1항제3호의 금액을 한도로 한다)을 감면한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양수인이 양도받은 제1항에 따른 주식등 또는 제2항에 따른 사업용자산을 양도일부터 5년 이내에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

	른 양도인에게 다시 양도하는 경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징수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기업 또는 제2항에 따른 기업(이하 이 조에서 “피승계기업”이라 한다)을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사업승계한 기업(이하 이 조에서 “승계기업”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승계일(이하 이 조에서 “사업승계일”이라 한다)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다음 과세연도부터 5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피승계기업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세액(연간 5억원을 한도로 한다)을 감면한다. ⑤ 승계기업이 사업승계일부터 제4항에 따른 감면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4항에 따라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징수한다. 1. 제1항에 따른 양수인이 양수한 주식등의 지분이 감소한 경우 2. 제2항에 따른 양수인이 양수한 사업용자산의 100분의 40 이상을 처분한 경우 3. 다음 각 목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가. 사업승계일부터 제4항에 따른 감면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피승계기업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장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규직 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정규직 근로자”라 한다) 수의 전체 평균이 사업승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직전 2개 과세연도의 정규직 근로자 수의 평균의 10

	0분의 90에 미달하는 경우 나. 사업승계일부터 제4항에 따른 감면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피승계기업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장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총급여액(이하 이 목에서 “총급여액”이라 한다)의 전체 평균이 사업승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직전 2개 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의 평균의 100분의 90에 미달하는 경우 4. 피승계기업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장을 1년 이상 휴업(실적이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폐업하는 경우 5. 승계기업이 피승계기업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제1항에 따라 주식등을 양도한 자 또는 제2항에 따라 사업용자산을 양도한 자에게 다시 양도하는 경우 ⑥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감면을 적용받으려는 양도인과 제4항에 따른 감면을 적용받으

		려는 승계기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을 신청하여야 한다. ⑦ 승계기업은 사업승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다음 과세연도부터 5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피승계기업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과 그 밖의 사업을 각각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한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지분의 감소 여부에 관한 판정방법, 정규직 근로자 수 및 총급여액의 평균 계산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30조의9(근로자기업인수에 대한 과세특례) 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주된 양도자”라 한다)가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른 우리사주조합(이하 이 조에서 “우리사주조합”이라 한다)에 2030년 12월 31일까지 해당 기업의 주식등 중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비율 이상을 근로자기업인수를 위하여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사업용자산에 해당하는 소득으로 한정한다)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이 경우 감면한도는 제1호에 따른 경영연수에 5천만원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기업을 2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자일 것 2. 해당 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일 것 3. 60세 이상인 거주자일 것 ② 이 조에서 “근로자기업인수”란 우리사주조합이 「법인세법」을 적용받는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하 이 조에서 “해당 기업”이라 한다)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을 취득하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요

	건을 모두 갖춘 날을 “사업승계일”이라 한다. 1. 우리사주조합이 해당 기업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보유할 것. 이 경우 보유비율을 계산할 때에는 「근로복지기본법」 제37조에 따른 조합원계정과 조합계정에 보유된 우리사주를 모두 포함한다. 2. 해당 기업의 근로자 중 우리사주조합원의 수가 전체 근로자 수의 100분의 50 이상일 것 ③ 주된 양도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관계에 있는 거주자로서 양도일 현재 5년 이상 계속하여 보유한 주식등을 근로자기업인수를 위하여 주된 양도자와 함께 우리사주조합에 양도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공동양도자”라 한다)의 그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사업용자산에 해당하는 소득으

	로 한정한다)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주식등의 양도비율을 판단할 때에는 주된 양도자와 공동양도자가 근로자기업인수를 위하여 양도한 주식등을 합산한다. 이 경우 주된 양도자와 공동양도자가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감면받는 세액의 합계액은 주된 양도자의 제1항제1호에 따른 경영연수에 5천만원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⑤ 주된 양도자 또는 공동양도자가 근로자기업인수를 지원하기 위하여 각자가 지급받을 주식등의 양도대금 중 100분의 50 이상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약정을 한 경우에는 그 양도자에 대하여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감면에 더하여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감면대상이 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에 상

	당하는 세액을 추가로 감면한다. 1. 해당 금액의 지급기일을 사업승계일부터 3년이 지난 날 이후로 정한 경우 2. 해당 금액을 사업승계일부터 3년 이상의 기간에 걸쳐 분할하여 지급받기로 한 경우 ⑥ 제5항에 따라 주된 양도자와 공동양도자가 추가로 감면받는 세액의 합계액은 주된 양도자의 제1항제1호에 따른 경영연수에 2천500만원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하고, 제1항, 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주된 양도자와 공동양도자가 감면받는 세액의 총합계액은 같은 경영연수에 7천500만원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주된 양도자와 공동양도자 사이의 감면한도 배분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⑦ 제1항, 제3항 또는 제5항에 따른 감면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⑧ 주된 양도자 또는 공동양도자는 근로자기업인수에 따른 주식등의 양도로 납부하여야 할 양도소득세 중 제1항, 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감면받은 세액을 제외한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5년의 범위에서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다. 이 경우 분할납부를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 ⑨ 제5항을 적용받은 자가 같은 항 각 호에 따른 약정 대상 금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약정한 지급기일보다 먼저 지급받은 경우에도 제1항, 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이미 감면받은 세액은 추징하지 아니한다. 다만, 약정 대상 금액의 전부를 약정한 지급기일보다 먼저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 전부를 지급받은 날 이후 제8항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아직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⑩ 우리사주조합은 사업승계일부터 5년이 되는 날까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유지하여야 한다. 1. 해당 기업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보유할 것 2. 해당 기업의 근로자 중 우리사주조합원의 수가 전체 근로자 수의 100분의 50 이상일 것 ⑪ 제10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항의 요건을 위반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우리사주조합이 보유하던 주식등을 처분하지 아니하였음에도 기업공개, 유상증자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제10항제1호의 비율에 미달하게 된 경우 2. 우리사주조합원의 퇴직 또는 사망으로 제10항제2호의 비율에 미달하게 된 경우로서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

	내에 같은 항 같은 호의 요건을 다시 충족한 경우 ⑫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항에 따라 추가로 감면받은 자는 그 감면받은 세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더한 금액을 양도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감면받은 세액은 추징하지 아니한다. 1. 사업승계일부터 사업승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다음 5개 과세연도의 종료일까지 해당 기업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규직 근로자 수의 전체 평균이 사업승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직전 2개 과세연도의 정규직 근로자 수의 평균의 100분의 90에 미달할 것 2. 같은 기간 해당 기업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총급여액의 전체 평균이 사업승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직전 2개 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의 평균의 100분의 90에 미달할 것

	⑬ 우리사주조합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제10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요건을 위반한 경우에는 제5항에 따라 추가로 감면받은 자는 그 감면받은 세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더한 금액을 양도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감면받은 세액은 추징하지 아니한다. ⑭ 우리사주조합이 근로자기업인수를 위하여 양수한 주식등을 양도일부터 5년 이내에 주된 양도자 또는 공동양도자에게 다시 양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된 양도자 또는 공동양도자가 제1항, 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감면받은 세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더한 금액을 양도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⑮ 제12항부터 제14항까지에 따라 세액을 납부하여야 하는 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고 해당 세액과 이자상당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⑯ 제1항부터 제15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근로자기업인수의 확인, 주식등의 보유비율 및 근로자 참여비율의 계산, 양도대금의 지급유예·분할지급 및 사후관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8조의4(우리사주조합원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①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른 우리사주조합원(이하 “우리사주조합원”이라 한다)이 우리사주를 취득하기 위하여 같은 법에 따른 우리사주조합(이하 “우리사주조합”이라 한다)에 출자하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의 출자금액과 400만원(제16조제1항제3호에 따른 벤처기업등의 우리사주조합원의 경우에는 1천500만원) 중 적은 금액을 해당 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단서	제88조의4(우리사주조합원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① ---------- ---------- ---------- ---------- ---------- ---------- ---------- ---------- ---------- ---------- ---------- ---------- ----------. 다만,

신설>	제30조의9에 따른 사업승계일 현재 해당 기업에서 5년 이상 계속하여 근무한 우리사주조합원이 근로자기업인수를 위하여 사업승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우리사주조합에 출자한 경우에는 해당 연도의 출자금액과 1천500만원 중 적은 금액을 해당 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② ~ ⑦ (생 략)	② ~ ⑦ (현행과 같음)
⑧ 우리사주조합원이 우리사주조합에 출자하고 그 조합을 통하여 우리사주를 취득하는 경우 그 주식의 취득가액과 시가와의 차액에 대한 소득세 과세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⑧ ----------.
1. 출자금액이 400만원(제16조제1항제3호에 따른 벤처기업 등의 우리사주조합원의 경우에는 1천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해당 차액에 대하여 과세하지 아니한다.	1. ----------제1항에 따라 해당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적용되는 소득공제 한도액----------.
2. 출자금액이 400만원(제16조제1항제3호에 따른 벤처기업 등의 우리사주조합원의 경우	2. ----------제1항에 따라 해당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적용되는 소득공제 한도액----

에는 1천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으로 취득한 우리사주의 취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이하 이 항에서 “기준가액”이라 한다)보다 낮은 경우에는 해당 취득가액과 기준가액과의 차액에 대하여 근로소득으로 보아 과세한다.	----------.
⑨ ~ ⑭ (생 략)	⑨ ~ ⑭ (현행과 같음)
제127조(중복지원의 배제) ① ~ ③ (생 략)	제127조(중복지원의 배제)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내국인이 동일한 과세연도에 제6조, 제7조, 제12조의2, 제31조제4항・제5항, 제32조제4항, 제62조제4항, 제63조제1항, 제63조의2제1항, 제64조, 제66조부터 제68조까지, 제85조의6제1항・제2항, 제99조의9제2항, 제99조의11제1항, 제104조의24제1항, 제121조의8, 제121조의9제2항, 제121조의17제2항, 제121조의20제2항, 제121조의21제2항, 제121조의22제2항 및 제121조의33제2항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감면되는 경우와	④ ----------제30조의8제4항, 제31조제4항・제5항----------

제8조의3, 제13조의2, 제24조, 제25조의6, 제25조의8, 제26조, 제30조의4(제7조와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104조의14, 제104조의15, 제104조의22, 제104조의25, 제104조의35, 제122조의4제1항 및 제126조의7제8항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공제되는 경우를 동시에 적용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다. 다만, 제6조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받는 경우에는 제29조의7 또는 제29조의8을 동시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7조 또는 제30조의8제4항과----------.
⑤ 내국인의 동일한 사업장에 대하여 동일한 과세연도에 제6조, 제7조, 제12조의2, 제31조제4항·제5항, 제32조제4항, 제62조제4항, 제63조제1항, 제63조의2제1항, 제64조, 제85조의6제1항·제2항, 제99조의9제2항, 제99조의11제1항, 제104조의24제1항, 제121조의8, 제121조의9제2항, 제121조의17제2항, 제12	⑤ ----------제30조의8제4항, 제31조제4항·제5항----------

1조의20제2항, 제121조의21제2항, 제121조의22제2항, 제121조의33제2항과 제121조의2 또는 제121조의4에 따른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감면규정 중 둘 이상의 규정이 적용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다. <단서신설>	----------. 다만, 제7조 및 제30조의8제4항은 동시에 적용받을 수 있다.
⑥ ~ ⑪ (생 략)	⑥ ~ ⑪ (현행과 같음)
제128조(추계과세 시 등의 감면배제) ① (생 략)	제128조(추계과세 시 등의 감면배제) ① (현행과 같음)
② 「소득세법」 제80조제1항 또는 「법인세법」 제66조제1항에 따라 결정을 하는 경우와 「국세기본법」 제45조의3에 따라 기한 후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제6조, 제7조, 제12조제1항·제3항, 제12조의2, 제31조제4항·제5항, 제32조제4항, 제62조제4항, 제63조제1항, 제63조의2제1항, 제64조, 제66조부터 제68조까지, 제85조의6제1항·제2항, 제96조, 제96조의2, 제96조의3, 제99조의9제2항, 제99	② ----------제30조의8제4항, 제31조제4항·제5항

조의11제1항, 제99조의12, 제102조, 제104조의24제1항, 제121조의8, 제121조의9제2항, 제121조의17제2항, 제121조의20제2항, 제121조의21제2항, 제121조의22제2항, 제121조의33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③ 「소득세법」 제80조제2항 또는 「법인세법」 제66조제2항에 따라 경정(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경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하는 경우와 과세표준 수정신고서를 제출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제출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소신고금액(過少申告金額)에 대하여 제6조, 제7조, 제12조제1항·제3항, 제12조의2, 제31조제4항·제5항, 제32조제4항, 제62조제4항, 제63조제1항, 제63조의2제1항, 제64조, 제66조부터 제68조까지, 제85조의6제1항·제2항, 제96조, 제96조의2, 제96조의3, 제99조의9제2항, 제99조의11제1항, 제99조의12, 제10	③ ----------제30조의8제4항, 제31조제4항·제5항

2조, 제104조의24제1항, 제121조의8, 제121조의9제2항, 제121조의17제2항, 제121조의20제2항, 제121조의21제2항, 제121조의22제2항, 제121조의33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④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해당 사업장에 대하여 제6조, 제7조, 제12조제1항·제3항, 제12조의2, 제31조제4항·제5항, 제32조제4항, 제62조제4항, 제63조제1항, 제63조의2제1항, 제64조, 제66조부터 제68조까지, 제85조의6제1항·제2항, 제96조, 제96조의2, 제96조의3, 제99조의9제2항, 제99조의11제1항, 제99조의12, 제102조, 제104조의24제1항, 제121조의8, 제121조의9제2항, 제121조의17제2항, 제121조의20제2항, 제121조의21제2항, 제121조의22제2항, 제121조의33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사업자가 제1호 또는 제2호의 의무 불이행에 대하여 정당한	④ ----------제30조의8제4항, 제31조제4항·제5항----------. ----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제132조(최저한세액에 미달하는 세액에 대한 감면 등의 배제) ① 내국법인(제72조제1항을 적용받는 조합법인 등은 제외한다)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과 「법인세법」 제91조제1항을 적용받는 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법인세(「법인세법」 제5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와 같은 법 제96조에 따른 법인세에 추가하여 납부하는 세액, 제100조의32에 따른 투자·배당 및 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를 적용하여 계산한 법인세, 가산세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추징세액은 제외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액공제 등을 하지 아니한 법인세를 말한다)를 계산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규정된 감면 등을 적용받은 후의 세액이 제2호에 따른 손금	제132조(최저한세액에 미달하는 세액에 대한 감면 등의 배제) ① ----------

산입 및 소득공제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의 과세표준(이하 이 조에서 “과세표준”이라 한다)에 100분의 17[과세표준이 100억원 초과 1천억원 이하 부분은 100분의 12, 과세표준이 100억원 이하 부분은 100분의 10,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7(중소기업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초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 최초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는 100분의 8, 그 다음 2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는 100분의 9로 한다)]을 곱하여 계산한 세액(이하 “법인세 최저한세액”이라 한다)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하는 세액에 상당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 등을 하지 아니한다.	---------- ---------- ---------- ---------- ---------- ---------- ---------- ---------- ---------- ---------- ---------- ---------- ---------- ---------- ---------- ---------- ---------- ----------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제6조, 제7조, 제12조제1항·제3항, 제12조의2, 제21조, 제	4. ---------- ----------제3

31조제4항·제5항, 제32조제4항, 제62조제4항, 제63조, 제64조, 제68조, 제96조, 제96조의2, 제99조의9, 제102조, 제121조의8, 제121조의9, 제121조의17, 제121조의20부터 제121조의22까지, 제121조의33에 따른 법인세의 면제 및 감면. 다만, 다음 각 목의 경우는 제외한다.	0조의8제4항, 제31조제4항·제5항----------.
가. ~ 라. (생 략)	가. ~ 라. (현행과 같음)
② 거주자의 사업소득(제16조를 적용받는 경우에만 해당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과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에서 발생한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가산세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추징세액은 제외하며 사업소득에 대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액공제 등을 하지 아니한 소득세를 말한다)를 계산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감면 등을 적용받은 후의 세액이 제2호에 따른 손금산입 및 소득공제 등	② ----------

을 하지 아니한 경우의 사업소득에 대한 산출세액에 100분의 45(산출세액이 3천만원 이하인 부분은 100분의 35)를 곱하여 계산한 세액(이하 “소득세 최저한세액”이라 한다)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하는 세액에 상당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 등을 하지 아니한다.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제6조, 제7조, 제12조제1항·제3항, 제12조의2, 제21조, 제31조제4항·제5항, 제32조제4항, 제63조, 제64조, 제96조, 제96조의2, 제99조의9, 제102조, 제121조의8, 제121조의9, 제121조의17, 제121조의20부터 제121조의22까지, 제121조의33에 따른 소득세의 면제 및 감면. 다만, 다음 각 목의 경우는 제외한다.	4. ----------제30조의8제4항, 제31조제4항·제5항----------.
가. ~ 다. (생 략)	가. ~ 다. (현행과 같음)
③·④ (생 략)	③·④ (현행과 같음)